

# 2026년 중소기업 환경개선자금 이자지원 계획 공고

「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조례」제5조 규정에 의거 「2026년도 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자금 융자금 이자지원 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2.

## 인 천 광 역 시 장

### 1. 사업개요

가. 지원사항 : 2026년 기업환경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의 융자금 발생이자

나. 지원규모 : 삼천칠백만원(37,000,000원) 범위 내

다. 지원대상

-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의 중소기업자로
  - 대기(악취·VOC포함)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
  -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
  - 대기·수질 측정기기를 설치하려는 자

라. 이자 지원 대상 융자금

- 「한국환경산업기술법」에 의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오염방지시설기금, 미세먼지시설자금
-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
- 「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의한 중소기업육성기금
- 그 밖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자금 중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으로써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금

마. 지원조건

- 지원규모 : 기업별 환경개선시설 융자금(2억원이내) 발생이자
  - ※ 2억원을 초과한 융자금은 2억원에 대한 발생이자만 지원, 초과액은 지원 제외
- 지원금리
  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분기별 이자율 적용
  - 타 자금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이자율 범위 내에서 지원

- 기준 금리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적용 이율과 타 자금 간 이차 차액은 기업 부담
- 이차 지원은 사업장에서 매분기 발생이자를 분기 마지막일까지 납부완료 후 다음달 5일(휴일 제외)까지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
- 보조금 지급은 예산 범위 내 시행하며 보조금 신청은 매년 예산확보 시에만 신청 가능

### 3.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

가. 이차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 접수 기간 : 매 분기 대상자에게 직접 통보

나. 이차보조금 교부신청 기간 : 2026. 1. 1 ~ 자금 소진 시까지(휴일 제외 매분기 익월 5일 이내)

이자발생기간	이자교부신청서 제출일	비 고
1/4분기(2026. 01. 01. ~ 03. 31.)	2026. 04. 01. ~ 04. 07.	
2/4분기(2026. 04. 01. ~ 06. 30.)	2026. 07. 01. ~ 07. 07.	
3/4분기(2026. 07. 01. ~ 09. 30.)	2026. 10. 01. ~ 10. 08.	
4/4분기(2026. 10. 01. ~ 12. 31.)	2027. 01. 04. ~ 01. 08.	

※ 4분기의 경우 2027년 예산 확보 시 이차교부 신청 가능

다. 이차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 서류

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용자승인업체
  - 환경개선자금 이차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부 【붙임1】
  -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개선자금 용자승인서 1부
- 기타 중소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
  - 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
  - 대기(악취,VOC), 수질분야 배출시설 설치 허가(신고)증 1부
  - 시공업체 사업자 등록증, 시공업체 방지시설 등록증(면허증 등) 1부
  - 중소기업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자금 용자승인서 1부
  - 방지시설 설치 자금 투자 내역 1부
- 기타 접수처에서 요구하는 방지시설 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

라. 이차보조금 교부 신청 서류

- 이차보조금 교부신청서 1부 【붙임2】
- 은행발급 납부 영수증 원본
- 기타 접수처에서 이차보조금 교부 시 요구하는 서류

## 4. 접수 방법 및 접수처

가. 접수 방법 : 관련 서류는 원본으로, 직접 방문 또는 우편(등기) 가능

나. 접수처

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

☎ (032)440-3503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(구월동 1138)

## 5. 지원제외 대상 및 지원결정 취소 대상

가. 지원제외 대상

- 접수일 현재 환경개선자금 융자액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초과액에 대한 이차지원 제외
- 타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통해 이차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
- 환경과태료 및 배출부과금 미납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
- 매분기 익월 5일(휴일 제외)까지 해당 분기 발생이자 지원 미신청 시 지원 제외

나. 지원결정 취소 대상

- 지원결정 후 폐업, 관외이전,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

## 6. 보조금 반환 및 보조금 교부 중지

가. 보조금 반환 및 보조금 교부 중지(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)

- 융자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
-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-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여 환경관리공단에서 융자승인 취소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등
- 4분기의 경우 2027년 예산 확보 시 교부 하며, 미확보 시 교부 중지

## 7. 기타사항
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대기보전과 (032-440-350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환경개선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							
일반현황	업 체 명			사업자등록번호			
	대 표 자 명			생 년 월 일			
	본 사 주 소	☎ :		☎ :	Fax:		
	사업장 주소	☎ :		☎ :	Fax:		
	업 종(번호)	( )	상 총 업 원 수	명	자본금	억원	
					매출액	억원	
주 생 산 품			대기업 계열 기업군 해당여부				
담 당 자 명			부서/직책			연락처	
신청내용	용자내역	용자신청일	용자신청금액	용자승인일	용자승인금액		
			원		원		
	용자지원 대상시설	시 설 명		용 량	수 량		
	<p>「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개선자금 용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 .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(대표자) (서명 또는 인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천광역시장 귀하</p>						
구비서류	<p>- 한국환경공단의 환경개선자금 용자승인서 1부.</p>						

[별지 제2호 서식]

<b>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</b>						처 리 기 간	
						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	
일 반 현 황	업 체 명				사업자등록번호		
	대 표 자 명				주민등록번호		
	본 사 주 소	☎	☎	Fax:			
	사업장 주소	☎	☎	Fax:			
신 청 내 용	용자은행	용자일자	용자금액	이 율 (변동금리)	이자납부액	납부일자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「인천광역시 기업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」 제4조제1항에 의하여 환경 오염방지시설설치자금의 이자납부후 붙임과 같이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 . . . 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인(대표자) <span style="float: right;">(인)</span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</p>							
구 비 서 류	- 은행발급 납부영수증 1부.						